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2017. 6. 22.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: 성동구청장

나. 제출일자: 2017. 5. 25.

다. 회부일자: 2017. 5. 26.(의안번호: 1125)

2. 제안이유

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·위탁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1) 대상시설

어린이집명	소재지	설치방법	규모(명, m²)		개 원
			정원	연면적	예정일
(가칭)하왕1-5	하왕십리 999	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 시설 무상사용계약	58	335.39	'17.9월

2) 위탁기간: 개원일로부터 5년

3) 위탁체 선정: 공개모집 후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선정

4) 주요 위탁내용

-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 관리

- 어린이집 운영(아동 입소·상담 등 보육, 보육운영계획 수립, 조직·인사·회계 등)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1)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- 2)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(위탁운영)
- 3)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민간영역의 보육시스템 및 체계를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재원 아동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 또한 민간 자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용이하여 아동들의 외부활동, 사회성 함양을 위한 기회 제공이 높아짐
- 2)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
- 3) 구 직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, 공무원 수 증가 등 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,「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제14조 및「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3항

나. 예산 조치: 260백만 원(시비 247, 구비 13)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, 개원예정인 구립 어린이집을 향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,
-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사무로서, 현재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이 모두 민간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,
-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,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그동안 언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바,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관점에서 위탁업체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